

중장기 체류자에 대하여

○중장기 체류자란

영주자, 가족체류 또는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특별영주자나 단기체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류카드

외국인등록제도에 따라 교부되어 왔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대신하여 중장기 체류자에게 교부되는 신분 증명서(카드)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정기간 마다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카드 교부에 관련된 수속

체류카드 갱신이나 성명의 변경에 관한 수속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서가 수속 장소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체류기한 및 자격(비자) 변경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제도에서는 체류기한이나 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 간주 제도

체류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1년 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오시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체류 기한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간주의 유효기간은 체류 기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고베지국(고베시 추오구 카이간토오리 29 고베지방합동청사: 078-391-637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입국하는 경우의 수속

일본에 새롭게 입국하시는 분은 주소를 둔 시정촌 관공서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는 공항 등에서 교부받은 체류카드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문의처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고베지국

(고베시 추오구 가이간 도오리 29 고베 지방 합동청사)

078-391-6377